

-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
-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
-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 문화재주변 건축허가 사전승인문화재지정공고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84. 6. 29)

대통령령11,453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차장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
에 공포한다.

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
장관의 권한중 다음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의 정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
할 수 있는 권한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는 권한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
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서울특별시장 및 직할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의 설
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노외주차장의 종류 및 명칭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년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허가신청서에
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재원조사서
2. 공사설계도서
3. 사업지안의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현황도
4. 주차장의 인근지역과 인근지역안의 도로소통 상황
을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평면도
5.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사서
6. 토지등기부 등본
7. 토지사용승락서(신청인이 토지소유자가 아닌 경우
에 한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에의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은 주차대
수 40대미만의 노외주차장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설치허가신청서”
는 “노외주차장설치신고서”로 본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기준) 법 제12조제4항 전
단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허가기준
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은 주거전용지
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일 것.
2.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
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교통법 제27조 각호 및 동법 제28조 각호에
해당하는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
나. 횡단보도(육교 및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에
서 5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다. 폭 6미터미만의 도로(주차대수 200대이상인 경
우에는 폭 12미터미만의 도로) 또는 종단배구가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의 부분
라. 새마을유아원·유치원·국민학교·특수학교·노
인복지시설·심신장애자복지시설·아동전용시설등
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이내의 도로의 부분
3. 노외주차장과 연결된 도로가 2 이상인 경우 그 노
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자동차 교통에 미치는 영
향이 적은 쪽의 도로에 설치 할 것.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노
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는 분리하여 설치할 것.

제5조 제1항 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외의 노외주차장관
리자”를 “시장·군수외의 노외주차장관리자”로, “시장또
는 군수에게”를 “시장·군수에게”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건축물에 부설하는 주차장설치기준)”을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하고, 동조제1
항 본문중 “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를 “건축물의 내

부 또는 그 부지안에”로 하며, 동조제 2 항중 “주차장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의 주차장설치기준”을 “주차장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개발사업구역안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으로 한다.

제 6 조의 2 내지 제 6 조의 5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 조의 2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공동설치) ① 법 제 19 조 제 3 항 전단에서 “건축물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 대이하인 규모를 말하며,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의 기준은 300 미터 이내로 한다.

② 법 제 19 조 제 3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 인근에 수인이 공동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건축물부설주차장공동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대수
2.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각 건축물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3.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종류
4.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공사착수연월일 및 준공예정연월일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공동설치 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사설계도서
2. 건축물의 대지와 주차장설치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 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 천 200 분의 1 이상의 지형현황도
3.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을 기재한 토지조서
4. 공동설치자의 공동소유임을 증빙하는 토지등기부등본
5. 주차장설치부지의 지목을 잡종지로 변경하기 위한 지목변경신청서

제 6 조의 3 (주차장설치의무의 면제등) ① 법 제 19 조 제 4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위치·용도 및 규모
2.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규모
3.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겠다는 뜻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의무면제 신청서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에 대하여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이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60 일 이내의 기간안에 평가한 토지가액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설치의

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건축할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의 장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노외주차장이 없거나 당해 건축물의 준공 시까지 이를 설치할 계획이 없는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법 제 1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다.

제 6 조의 4 (주차장설치비용의 납부등) ① 법 제 19 조 제 4 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제 6 조의 3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된 토지가액 평가서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1 대당 소요대지 면적은 24 제곱미터로 한다.

제 6 조의 5 (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무상사용)

① 시장·군수는 제 6 조의 4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 19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준공검사필증(건축법 제 7 조 제 4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하여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가사용 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교부할 때에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중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고, 건축물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로부터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건축물준공검사필증의 교부당시의 그 주차장의 주차요금정수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기간동안 당해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함에 있어 시장·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중 당해 건축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이 주차난이 심하거나 다른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그 주차장의외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 7 조 제 1 항중 “법 제 19 조 제 3 항”을 “법 제 19 조 제 6 항”으로, “5,000 제곱미터”를 “5 천 제곱미터”로, “2,000 제곱미터”를 “2 천 제곱미터”로 하고, 동조 제 2 항 전단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당해 건축물 또는 대지안이나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 미터 이내의”를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미터 이내의”로 하며, 동항 후단중 “각 건축물의 대지로부터 통행거리 200 미터 이내의”를 “각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미터 이내의”로 하고, 동조 제 3 항 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하며, 동조 제 4 항중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 19 조 제 3 항의 규정”을 “시장·군수는 법 제 19 조 제 6 항의 규정”으로 한다.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 조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노외주차장의 용도로의 전용허가등) ①법 제19조제 2 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부설주차장의 면적중 그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종류 및 주차대수
2.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준공연월일
3. 노외주차장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주차대수
4.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 1 항의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축척 300분의 1 이상의 건축물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배치도(방위, 대지면적,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을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축물부설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는 축척 100분의 1 이상의 주차장평면도(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위치 및 폭과 각 주차장의 출입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3. 주차장의 인근지역과 인근지역안의 도로소통상황을 표시한 축척 1만분의 1 이상의 평면도
4. 신청인이 건축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유자의 노외주차장 용도전용승낙서)

③ 법 제19조의 2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면적중 그 설치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주차대수 10대이하인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이를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할 수 있다.

④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노외주차장의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노외주차장용도전용허가신청서”는 “노외주차장용도전용신청서”로 본다. 제 8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의 2 (조업주차장의 설치대상건축물) 법 제19조의 3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부표중 판매시설·창고시설 또는 운수시설로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 9 조 제 1 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하고, 동조제 2 호 및 제 3 호중 “시장 또는군수이외의자”를 각각 “시장·군수외의 자”로 한다.

제10조 본문중 “주차장정비지구안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자”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로 하고, 동조제 1 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하며, 동조제 2 호중 “시장 또는 군수이외의 자”를 “시장·군수이외의 자”로, “2,000제곱미터”를 “2천제곱미터”로 하고 동조제 3 호중 “시장 또는 군수 이외의 자”를 “시장·군수외의 자”로, “1,000제곱미터이상 2,000제곱미터미만”을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으로 한다.

제10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10조의 2 (도시계획세징수액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될 금액) 인구 100 만인 이상의 시에 있어서는 법 제 21조의 2 제 2항제 5 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 본문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로 한다. 제11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 2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4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②시장·군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의 총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제 1 호 내지 제 4 호중 “시장 또는 군수”를 각각 “시장·군수”로 한다.

제13조 제 2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30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을 명시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장·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 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건축중인 도심지개발사업구역안의 건축물부설주차장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건축중에 있는 도심지개발사업구역안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제 6 조제 2 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 표] 위 반 행 위 별 과 징 금 액

위 반 행 위	해 당 법 조 문 (주 차 장 법)	과징금액
1.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않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법 제15조제 2 항	250만원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법 제15조제 2 항, 법 제15조제 3 항	100만원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된 때	법 제12조제 3 항	50만원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법 제17조제 2 항	50만원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할 때	법 제18조제 1 항	50만원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법 제23조제 3 항	50만원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	법 제25조제 1 항	50만원
8.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법 제26조	50만원

- 고 : 1. 윗 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윗 표중 제 2 호의 경우 그 구체적인 과징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직 과징금이 과하여지지 아니한 위반행위의 회수·기간 등을 참작하여 정한다.

◇**駐車場法施行令 改正理由**
 駐車場法の改正(1983. 12. 31 法律 第3,708號)에 따라 그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하려는 것임:

◇**主要骨子**

- 가. 市長·郡守의 者가 市場·郡守에게 申告하고 設置할 수 있는 路外駐車場の 規模를 駐車臺數 40臺 미만으로 함(令 第3條第3項).
- 나. 市場·郡守의 者는 駐車臺數 40臺 이상의 路外駐車장을 設置하려면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하는바, 그 許可基準으로서 住居專用地域 및 生産綠地地域에서는 路外駐車장을 設置할 수 없도록 하고, 道路交通法에 의하여 駐·停車가 금지되는 場所와 横斷歩道에서 5미터이내의 道路部分등에는 路外駐車場の 出入口를 設置할 수 없도록 하며, 특히 駐車臺數가 400臺를 초과하는 路外駐車장은 그 出口와 入口를 分離하여 設置하도록 함(命 第4條).
- 다. 建築物의 空地隣近에 數人이 共同으로 設置하거나 그 設置費用을 납부함으로써 停車場設置義務를 免除받을 수 있는 建築物附設駐車場の 規模를 駐車臺數 5臺이하로 함(令 第6條의 2 第1項).
- 라. 市長·郡守는 建築物附設駐車場の 設置費用을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建築物竣工檢査畢證을 교부할 때에 市長·郡守가 設置한 停車場중 당해 建築物의 所有者가 사용할 수 있는 停車場을 지정하되, 납부한 費用에 상당하는 期間동안 無償으로 사용하게 함(令 第6條의 5 第1項).
- 마. 人口 100萬이상의 市에 있어서는 都市計劃稅徵收額중 10 퍼센트에 해당하는 金額을 停車場特別會計의 財源으로 하도록 함(令 第10條의 2). <법제처 제공>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84. 6. 29)

대통령령제11,454호

국무회의의심의를 거친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관광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중 “제2호 내지 제5호”를 “제2호 내지 제4호”로 하고, 동조 제2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3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제2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교통부장관이”를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결정을 위한”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교통부장관은”을 각각 “도지사는”으로 한다.

제4조의3 제1호나목중 “제2조제3호”를 “제2조제2호”로 하고, 동호 다목중 “제2조제4호”를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조의5 제3항제4호중 “서울특별시·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한다.

제4조의5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도의 민방위국장 (서울특별시·직할시의 경우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참석하여 소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

제14조제1항제9호중 “관광숙박업”을 삭제하고, 동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대통령령 제11,021호 관광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부칙 제3항중 “6개월이내에”를 “1년 6개월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방법시행령중개정령(84. 6. 30)

대통령령제11,461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소방법 시행령중 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내부부령이 정하는 피난 또는 소화 활동상 유효한 개구부의 면적이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중 “학예전시관·공중목욕장”을 “학예전시관·사업장·공중목욕장”으로, “창고·차고 및 주차장으로서”를 “창고로서”로 하고, 동호 다목중 “교회·사찰 및 사업장으로서”를 “교회 또는 사찰로서”로 하며, 동호 “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같이 신설한다.

라.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바닥면적이 500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만, 지하층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그 바닥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소방공무원으로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청원소방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3층이상의 여관

4. 특수목욕장·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제1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카텐·암막·카페트·반자 또는 벽에 사용하는 포지(실내장식용 직물류를 말한다)·식모벽지 및 침구류(시트카바 및 매트레스에 한한다)

제11조제5항중 “검사신청·검사방법·표지 및 방염처리자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을 “검사신청·검사방법 및 표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중 “피난교”를 “피난교·피난बाट”로 하며, 동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비상조명등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소화용수설비는 화재의 진압에 필요한 소화용수를 저장하는 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소화수조·저수지 기타 소화용수설비

2.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17조제2호 다목중 “인 것.”을 “인 것은 전층.”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가목중 “공연장 또는 집회장으로서 무대부(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바닥면적이”를 “공연장 또는 집회장의 무대부분(무대에 부설된 장치물실 및 소품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그 바닥면적이”로 하고, 동호 라목중 “그 바닥면적이 1천500평방미터이상인”을 그 층의 바닥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으로 한다.

제17조제3호 “마”목과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의 용도로 사용되는 소방대상물은 전층

바. 가목 내지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11층 이상의 부분으로서 건축법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그 층

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 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인것.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속된 보일러실 제17조제4호 나목중 “발전실 및 변전실로서”를 “전기실(발전실·변전실·축전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로 하며, 동조 제7호 다목중 “인 것”을 “안것은 전층”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제17조제11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건축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호텔·여관·음식점 및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1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도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객석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구 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	
가. 공연장·경기장·집회장 및 유흥음식점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통로유도등 및 객석유도등
나. 시장·호텔·종합병원및 특수목욕장	대형피난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다. ○전문음식점·다방·여관·기숙사 및 병원 ○가목 및 나목의 제1종장소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라. 과자점·여인숙·의원·노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 및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소형피난구유도등(또는 소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마. 기타의 제1종 장소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

제17조 제13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 2.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가. 5층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기타의 통로. 다만, 경기장·기숙사 및 의료원의 거실을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그 바닥면적이 450평방미터 이상인 것은 해당층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통로

제17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설 비	소 화 용 수 설 비
소방대상물	
가. 대지면적이 2만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바닥면적(지하층을 제외한 층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 다만, 당해 소방대상물의 건축법시행령 제55조의 2의 규정에의

수가 1층인 경우에는 1층의 바닥면적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2층 이상인 경우에는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5천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 경우 동일 대지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벽 상호간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하 2층에 있어서는 5미터이하인 것은 이를 1개의 건축물로 본다.	한 비상급수시설이 소방법령의 소화용수설비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소화수조 또는 저수지로 갈음할 수 있다.
나. 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지하층을 제외한다)이 2만5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천평방미터 이상인 것.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제18조 제2호 다목중 “인 것”은 “인 것은 전층”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나목중 “1천500평방미터 이상인”을 “1천평방미터 이상인”으로 하며, 동호 다목중 “100평방미터 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준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200평방미터 이상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인”을 “200평방미터 이상(그 층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평방미터 이상)인”으로 하고,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소방대상물에 부착된 보일러실

제18조제5호 다목중 “600평방미터이상인 것”을 “600평방미터이상인 것은 전층”으로 하고, 동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제1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및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구 분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
소방대상물	
가. 정거장·대합실·학예전시관·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나. ○강습소 ○가목의외 제2종장소의 지하층·무창층 및 11층이상의 부분	중형피난구유도등(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다. 사업장·교회 및 사찰	소형피난구유도등(또는 소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
라. 기타의 제2종장소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

제18조에 제10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 2.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기타의 통로. 다만, 학교 및 공동주택의 거실을 제외한 다.

제19조제2호 다목 및 제6호 다목중 “이상인 것”을 각각 “이상인 것은 전층”으로 하고, 동조 제6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통신기기실 및 전산기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것.

제1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중형피난구유도등(또는 중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은 지하층·무창층 및 11층 이상의 층에, 소형발광유도표지 또는 축광유도표지는 기타의 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6호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형피난구유도등(또는 대형발광유도표지) 및 통로유도등은 모든 지하(터널을 제외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6의 2.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 연면적 1천평방미터 이상인 소방대상물의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계단 및 기타의 통로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복합건축물) 별표 1의 복합건축물(제1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당해 소방대상물의 주된 용도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주된용도외의 부분이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용도별 기준수치 이상인 경우는 각 용도별로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제3장에 제4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소방시설의 점검 및 보고

제24조2 (점검대상)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할 소방대상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1의 특수장소중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배연설비가 설치된 소방대상물
2.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장소로서 제1호의 소방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제24조3 (점검결과보고 등)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횟수 및 결과보고 기타 점검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조제업허가 및 판매업신고대상 소방용기계·기구등)”을 “(제조업허가대상인 소방용기계·기구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의 허가를 받거나 판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할 소방용기계·기구 등은”을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할 소방용기계·기구 등은”으로 한다.

제25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호 괄호중

“소화약제 및 할로겐화물소화약제를”을 “소화약제 · 할로겐화물소화약제 및 화학반응식 거품소화약제를”로 하며, 동조 제 8 호 괄호중 “압력검지장치” 다음에 “일체 개방밸브”를 삽입하고, 동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소화기(화학반응식거품소화기를 제외한다),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및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을 제외한다)

12. 방열부

제 5 장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장 소방설비공사업 등

제27조(면허의 기준) ① 법 제4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장비 및 공사실적은 별표 5 와 같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법 또는 다른법에 의한 업종별 및 법인별로 각각 별개의 자본금으로 하여야 하고, 재산의 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28조(도급한도액산정 등) ① 법 제42조의 7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에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최근 2 년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의 연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에는 하도급분은 제외하고 하수급분은 포함한다.

③ 2 이상의 소방설비공사업자가 1 건의 소방시설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받을 경우에는 각 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한도액으로 한다.

④ 내무부장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한도액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 도급한도액의 유효기간은 차기 도급한도액의 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⑥ 도급한도액의 결정을 받고자 하는 소방설비공사업자는 매년 전년도에 소방설비 공사실적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소방설비공사업자의 도급한도액의 적용은 그가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1 건공사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의 2 (도급계약의 해지) 법 제42조의 9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의 도급인은 당해 소방설비공사업자로부터 그 면허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또는 면허의 갱신을 받지 못하여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것을 통지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8조의 3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구분) 법 제42조의 11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자격구분에 따라 그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6 과 같다. 다만, 소방시설의 경미한 정비시공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8조의 4 (소방설비기사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의 1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때마다 그 취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내무부장관은 소방설비기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2조의 12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1. 법 제42조의 5 제 1 호 내지 제 4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자격증 또는 신고필증을 다른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 기사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4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제조소) ① 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라 함은 1 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제조시설·취급시설 및 저장시설을 포함한다)을 한 곳을 말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시설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시설을 말하며,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제34조 2 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말한다.

제34조(취급소) 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취급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주유취급소 : 고정된 주유설비에 의하여 자동차 등의 연료탱크에 직접 주유하고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한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주유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2. 판매취급소

- 가. 제 1 종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5 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제 1 종 판매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 나. 제 2 종 판매취급소 : 점포에서 실소비자에게 지정수량 5 배이상 20배미만(단위농업협동조합이 경영하는 경우와 주유취급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면단위 이하의 지역의 경우에는 35배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제 2 종 판매취급시설”이라 한다)을 한 취급소

3. 일반취급소 : 위험물제조소 및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취급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취급소로서 위험물을 사용하여 일반제품을 생산·가공 또는 세척하거나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용기에 옮겨담거나, 버너 등에 소비하기 위하여 1 일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이하 “일반취급시설”이라 한다) 또는 제34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을 한 취급소

제34조의 2 (저장시설의 구분) 법 제14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하며, 저장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다.

1. 옥내저장시설 :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2. 옥외탱크저장시설 : 옥외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 옥내탱크저장시설 :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 4 호 내지 제 6 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4. 지하탱크저장시설 :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다만, 제 5 호의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5. 간이탱크저장시설 : 간이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6. 이동탱크저장시설 : 차량(피견인차를 포함한다)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7. 옥외저장시설 : 옥외의 장소에서 별표 2 의 제 2 류 위험물중 유황, 제 4 류 위험물중 제 2 석유류·제 3 석유류·제 4 석유류·동식물유 또는 제 6 류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8. 선박탱크저장시설 : 선박(선박안전법 제 2 조제 1 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에 한한다) 또는 부선안에 고정시킨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

제 3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7 조의 2 (제조소등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법 제 16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도지사는 위험물의 품목·수량·저장 및 취급방법과 주위의 상황을 판단하여 화재의 발생 및 연소의 우려가 현저하게 적거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도로 막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7 장 제 3 절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장 제 4 절 및 제 5 절을 삭제한다.

제 3 절 위험물시설안전원 및 자체소방조직

제 39 조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 법 제 1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시설안전원을 두어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의 1 만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을 가진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조시설 및 일반취급시설을 제외한다.

1. 보일러·버너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시설
2. 차량에 고정된 탱크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위험물을 충전하는 일반취급시설
3. 철제드럼 기타의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담는 일반취급시설
4. 압유장치·유회유 순환장치 기타 이에 준하는 장치로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시설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

6.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의 적용을 받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

제 40 조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 법 제 2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재에 관한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할 제조소등은 지정수량 1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시설 또는 일반취급시설(지정수량 30 배 이하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시설로서 그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는 곳을 제외한다), 지정수량의 15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시설, 지정수량의 2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시설 또는 지정수량의 100 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시설을 가진 제조소등으로 한다. 다만, 광산보안법에 의한 보안규정을 정하고 있는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제 41 조 (자체소방조직의 편성) ① 법 제 2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로 지정받은 사업소(이하 “지정시설”이라 한다)에는 다음표의 사업소 구분에 따라 동표의 화학소방자동차 및 그 조직인원을 가지고 각각 편성한 자체소방조직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또는 기타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성을 달리할 수 있다.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조직인원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 의 제 4 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 만배 미만인 사업소	1 대	5 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 의 제 4 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12 만배 이상 24 만배 미만인 사업소	2 대	10 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 의 제 4 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24 만배 이상 48 만배 미만인 사업소	3 대	15 인
지정시설에 있어서 취급하는 별표 2 의 제 4 류 위험물이 지정수량의 48 만배 이상인 사업소	4 대	20 인

② 제 1 항의 화학소방자동차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제 1 항의 화학소방자동차에는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와 기구 및 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 10 장을 제 12 장으로, 제 9 장을 제 11 장으로, 제 8 장을 제 10 장으로 각각 하고, 제 8 장 및 제 9 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장 청원소방

제 42 조 (청원소방원의 배치등) ① 법 제 68 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소방원을 배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청원주”라 한다)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배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하나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다수의청원소방원이 배치된 경우로서 조직적인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원소방대를 편성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청원소방원의 배치에 따르는 경비등) ①청원주는 청원소방의 배치에 따르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청원소방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및 수당
2. 청원소방원의 피복비
3. 청원소방원의 교육비
4.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5. 기타 청원소방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제 1 항제 1 호의 최저부담기준액과 동항 제 2 호 및 제 3 호의 부담기준액은 내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청원소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청원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기타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원주가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
2. 직무상의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퇴직 후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

④청원주는청원소방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 (청원소방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청원소방원으로 채용되지 못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18세미만인 자
5. 징병검사 및 병역의무의 기피 사실이 있는 자
6. 신장 160센티미터 미만이거나 체중 50킬로그램 미만인 자 또는 팔·다리의 활동이 완전하지 못한 자

제45조 (복 제) ①청원소방원은 근무중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청원소방원의 복제 및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6조 (교육) 청원주는 청원소방원으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미리 소방교육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47조 (청원소방원의 직무등) ①청원소방원은 청원주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0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업무의

보조

2. 법 제1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주임업무의 보조

3. 법 제49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 연소의 방지 및 인명구조 작업

4.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②청원소방원의 배치·해임·보수·교육 및 근무감독 등의 운영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제 9 장 구급업무

제48조 (구급대의 편성) ①법 제70조의10 제 5 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대의 편성기준은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의 소방력기준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정한다.

②구급대원은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1. 소방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구급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2.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하는 간호 및 구급에 대한 강습을 받은 자
3. 간호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간호 및 구급 과정을 수료한 자

제49조 (의료기관의 지원) 법 제70조의10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의료기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7조 본문중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자를”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고, 동조 제 1 호·제 2 호 및 제 4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소등(난방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42조의 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 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3. 법 제42조의1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소방설비기사

제6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3조 (권한의 위임) 법 제7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법 제35조 법 제37조·법 제42조의2·법 제42조의 3·법 제42조의 6·법 제42조의 7 및 법 제42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에게, 법 제15조·법 제17조·법 제20조·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한은 이를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방서장에게,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서울특별시시장 및 직할시장을 제외한다)·군수에게 각각 위임한다.

“제64조”를 “제65조”로 하고,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사실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행한다.

② 법 제7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 비고란 제 3 호라목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 별표 비고란에 제 9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관, 20리터이하의 불연성용기에 수납 밀전하여 지정수량미만의 양을 저장·취급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9. 도료류 기타 품명이 다른 물질을 혼합한 것에 속하는 위험물의 품명과 그 지정수량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 관한 제17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중 소화

기가압용가스용기·일체개방밸브 및 방열복의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수장소의 침구류방염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제11조제 2 항제 5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침구류의 방염처리를 1985년12월말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 (피난기구등에 관한 경과조치) 소방대상물의 관계자는 제17조제1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피난기구와 제17조제13호·제18호제10호·제19조제10호 또는 제21조제 6 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형피난기구유도등·중형피난기구유도 등 또는 유도표지의 설치를 1985년 6 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의 개정)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관계법령을 정비한다.

1. 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중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 3 항제 2 호의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를”을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소방법시행령 제13조제 3 항제 2 호 및 제 3 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등·비상조명등 또는 유도표지를 말한다)”로 한다.

2.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일반공사란 제 2 호 건축공사의 내용중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 및 소방시설을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를 “(이에 부수되는 기초공사를 포함하며, 특수공사를 제외한다)”로 한다.

[별표 1]

특수장소(특수소방대상물)

종 별	용 도 별	비 별
제 1 종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장: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를 제외한다)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방송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한 청문을 포함한다)에 사용되는 장소 및 그러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 ○ 경기장: 공중이 운동이나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거나 이를 관람할 수 있는 객석을 갖춘 건축물 ○ 집회장: 회의·사교 등을 목적으로 공중이 집합할 수 있는 건축물 ○ 음식점: 음식물 또는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행하는 건축물 ○ 유기장: 대중오락을 위한 유기등의 시설을 갖춘 건축물 ○ 시장: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서 물품의 매매 교환을 행하는 건축물 ○ 여 관: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보통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 ○ 호 텔: 한국식 또는 서양식의 구조 및 설비로서 고급의 시설을 하여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이나 휴양지의 숙박시설 ○ 여인숙: 숙박하는 장소를 두고 다수인이 공용하게 하는 구조 및 설비로서 숙박료를 받아 사람을 숙박하게 하는 건축물 ○ 기숙사: 관공서·학교·회사 등에서 종업원·학생 등을 집단적으로 거주시키기 위한 건축물 	<p>극장·영화관·연예장 등</p> <p>각종경기장(탁구장·보울링장·실내골프장 등)·체육관 등</p> <p>공회당·시민홀·예식장·노동회관 등</p> <p>대중음식점·전문음식점·유흥음식점(카바레·나이트클럽·요정 등)과자점·다방·휴게실</p> <p>당구장·기원·댄스교습소·실내사격장·전자유기장등 도매시장·일반소매시장·백화점·슈퍼마켓·쇼핑센터</p> <p>콘도미니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원: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다수인을 위하여 의료, 조산의 업을 행하는 건축물 ○노인복지시설: 노인에 대하여 급식·치료·교양·오락·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아동복지시설: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를 위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심신 장애자를 입소 또는 통원케하여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거나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유치원: 미취학아동을 수용하여 조직적인 유희활동을 시켜 그 성장발달을 도모하게 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공중목욕장: 공중으로 하여금 목욕 또는 수영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춘 건축물(운동 및 위락 시설을 포함한 다) 	<p>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 양로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복지회관 등</p> <p>아동상담소·보육시설·모자보호시설·탁아시설·아동휴양시설 등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시각장애자 재활시설·청각, 언어 기능장애자 재활시설</p> <p>○일반목욕탕(공동탕·가족탕) ○특수목욕탕(한증탕·터키탕) ○실내 수영장 ○안마시술소</p>
제 2 종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거장: 기차·자동차·선박·항공기 등이 정차·정박·또는 계류하는 시설 ○대합실: 기차·자동차·선박·항공기의 여객의 대합에 공하여지는 건축물 ○교회·사찰: 종교상의 예배를 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집합하는 건축물 ○4층 이상의 공동주택: 다수인의 세대가 거주하는 시설로서 대지·복도·계단 및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학교: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균등하게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게하는 시설 또는 건축물 ○학예전시관: 도서·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보존하여 공중의 이용에 공하거나 역사·예술·산업·자연과학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관·전시하여 공중의 관람에 공하는 건축물 ○강습소: 다수인에게 강의·강습등을 할 목적으로 그 시설을 갖춘 건축물 ○사업장: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무 또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일정한 시설 및 건축물 ○공장: 기계 또는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제조·개조·가공·수리·포장등을 하기 위하여 다수인이 근무하는 시설 및 건축물 ○영화 및 텔레비전촬영소: 영화 또는 텔레비전을 촬영하는 시설을 갖춘 건축물 	<p>터미널·선박·항공기 발착장</p> <p>아파트</p> <p>도서관·박물관·미술관·과학관</p> <p>학원·예·체능계 강습소·사설강습소·태권도장·헬스클럽장·독서실 등 이 표에서 열거한 것 및 축사를 제외한 관공서·회사·은행·이발소·미장원·화장장·오물처리장 등</p> <p>방송시설 등</p>
제 3 종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고: 물품의 멸실·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을 격납하는 건축물 ○차고·주차장: 주차하기 위한 시설 및 건축물 ○비행기격납고: 비행기를 격납하는 창고 	화물터미널 등
지 정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지하가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당해 지하도를 합한 것	지하상가·터널(케도차량용 제외)
복 합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제 1종장소 내지 제 3종 장소에서 정한 용도가 2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건축물(다만, 1개의 건축물에 주된 용도이외의 종된 부속용도가 건축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복합 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별 면허기준

업종별	항 목	기 술 능 력	자 본 금	공사실적 (신규면허인 경우 제외)	시 설 및 장 비
방염처리업		화공 또는 섬유분야기사 1명 이상	○법인: 자본금 2천만원 이상 ○개인: 재산평가액 4천만원 이상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20m ² 이상, 실험실 전용 면적 13m ² 이상) ○장비: 부표와 같다
소방시설공사업	제 1 종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이상 1인을 포함한 소방설비기사 2인이상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	1억 2천만원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m ² 이상) ○장비: 부표와 같다
	제 2 종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급이상 1인을 포함한 소방설비기사 2인이상	○법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 ○개인: 재산평가액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m ² 이상) ○장비: 부표와 같다.
소방시설정비업	제 1 종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2인이상	○법인: 2천 5백만원 이상 ○개인: 재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33m ² 이상) ○장비: 부표와 같다.
	제 2 종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2인이상	○법인: 2천 5백만원 이상 ○개인: 재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33m ² 이상) ○장비: 부표와 같다.

비고:

1. 자본금(재산액)은 소방설비공사를 위한 실질자본금을 말한다.
2. 공사실적에는 소방설비공사와 관계없는 납품 및 자재구입실적을 제외한다.

(부표)

소 방 설 비 공 사 장 비

제 1 종공사·정비업			제 2 종공사·정비업			방 염 처 리 업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장 비 명	규 격	수 량	장 비 명	규 격	수 량
파이프머신	3 인치	각 2	전기회로테스터		3	분무기	동력 1HP 이상,	1
에어컴프레	2 HP	1	전기절연저항시험기	DC 500V	1		방사압력 5kg/cm ² 이상의 것	
수압기	20kg/cm ²	1		(최소눈금 0.1 MΩ 이하인 것)		침적수조		1
전기드릴	1/2 HP	1				탈수기	원심분리형으로	1
오스터	1, 2, 4인치	각 1	열감지거시시험기		2		내용적 20ℓ 이상의 것	
하론농도측정기		1	연기감지거시시험기		2			
이산화탄소농도 측정기		1	조도계	최소눈금 0.2 Lux 이하인 것	1	합판·섬유판처리용감압·또는 가압설비	300mmHg	1
검량계	200kg	1	음량계		1	항온조	7 kg/cm ²	
풍압풍속	1~10mmHg (기압측정 가능한 것)	1	초시계		1		온도조정이 40℃에서 200℃ 이내이고, 10개 시험편을 동시 건조시킬 수 있는 것	1
음량계		1	전기드릴	1/2HP	1			
초시계		1				데시케이터	저름 36cm 이상의 것	1
방수압력측정기		1				비중계		1
레드취부렌치		1				연소시험기		1
봉인렌치		1				마이크로버너		1
포채집기 및 방출포량시험기		1						
소화기가압용기		1						

스파나 소화기용기내폐 인트살포기 소화기고정틀 전기회로테스터 전기절연저항시 험기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 기	DC-500V(최소 누금 0.1MΩ 이 하인 것)	1 1 2 1 1 1			맥켈버너 에어믹스버너	1 1
--	-----------------------------------	----------------------------	--	--	----------------	--------

[별표 6]

소방설비기사등의 자격구분에 따른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

자 격 구 분		소방시설의 공사 또는 정비의 종류	
소 방 설 비 기 사	기 계 분 야 설 비 기 사 (1 · 2 급)	소방설비기사 1 급(제 1 류) 소방설비기사 2 급(제 1 류)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연결살수설비·연결송수관설비·물분무소화설비· 동력소방펌프설비·옥외소화전설비 및 소화용수설비의 공사 또는 정비(소방설비기 사 2 급 자격취득자는 당해 소방시설의 정비에 한한다. 이하 같다)
		소방설비기사 1 급(제 2 류) 소방설비기사 2 급(제 2 류)	포소화설비의 공사 또는 정비
		소방설비기사 1 급(제 3 류) 소화설비기사 2 급(제 3 류)	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물소화설비·분말소화설비 및 배연설비의 공사 또는 정비
		소방설비기사 1 급(제 6 류)	소화기의 정비
		소방설비기사 1 급(제 5 류) 소방설비기사 2 급(제 5 류)	금속제 피난사다리·구조대 및 완강기의 공사 또는 정비
		전 기 분 야 설 비 기 사 (1 · 2 급)	소방설비기사 1 급(제 4 류) 소방설비기사 2 급(제 4 류)
	소방설비기사 1 급(제 4 류) 소방설비기사 2 급(제 7 류)		전기화재경보기·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의 공사 또는 정비

비고:

1. 기계분야설비기사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부대전기시설에 대한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있다.
2. 전기분야설비기사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에 부설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에 대한 공사 및 정비를 할 수 있다.

◇ 消防法施行令 改正理由

소방법의 개정(1983. 12. 30 법률 제3,675호)으로 소방설비
공사에 대한 면허제가 실시되고 청원소방원 제도가 새로이
실시되는 한편, 위급한 환자에 대한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소
방구급대가 편성·운영되게 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호텔 및 고층건물에 대하
여 스프링클러 및 피난기구 등의 설비를 보강하도록 하여, 화
재를 미리 예방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신체·재산을 보호하
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려는 것임.

◇ 主要骨子

- 가. 현재 화재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전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이러한 동의대상물
중 차고·주차장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 회사·은
행 등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1천8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동의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각각 500제곱미터 및 1천제곱
미터로 하향 조정함(영 제 4 조).
- 나. 현재 일정규모이상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방화관리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고 있는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 근무
한 경력이 있는 사람도 이러한 방화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
도록 정함(영 제 8 조제 1 항제 3 호).
- 다. 현재 호텔·극장·3층이상의 여관 등의 고층 건축물에
대하여는 카텐·카페트 등의 물품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트카바 및 매트레스 등의 침구류도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을 미
리 예방하도록 함. 다만, 이의 시행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
이 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1985년12월 말일까지 방염처리하
면 되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영 제11조제 2 항제 5 호 및 부칙 제 2 항)

- 라. 소방대상물이 갖추어야 할 소화용수설비에 상수도소화용
수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건축법 의 비상급수시설이 갖추
어진 경우에는 따로 소화수조·저수지·기타 소화용수설비
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17
조제14호).
- 마. 현재에는 여관·호텔에 대하여 11층 이상의 부분에 대하
여만 스프링클러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관·호텔의
경우에는 대형화재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11층 이상의 소
방대상물로서 여관 또는 호텔로 사용되는 것은 전층에 대
하여 스프링클러설비를 하도록 보완하여 대형화재의 위험
을 예방하도록 함(영 제17조제 3 호 마목).
- 바. 소방시설을 갖추에 있어서 여러가지 용도로 쓰이는 복합
건축물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그 주된 용도에 대한 시설
기준을 적용토록 하되, 주된 용도외의 부분이 각 용도별
시설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적용하
도록 함(영 제22조).
- 사. 현재 소방용기계·기구의 제조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하는바, 허가대상 소방용기계·기구에 소화기 가압용 가스용기·일체개방밸브 및 방열부를 추가하여 이를 제조함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도록 함(영 제25조제 1호·제 8호 및 제12호).

아. 소방법의 개정으로 소방설비공사업이 면허제로 됨에 따라 그 면허의 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장비 및 공사실적을 소방설비공사업의 종류별(제 1종 내지 제 3종)로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7조 및 별표 5).

자. 소방설비공사업자는 그 면허를 받더라도 소방법 제42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액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소방시설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도급한도액은, 자본금에 소방설비공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의 연평균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 및 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28조 및 제28조의 2).

차. 소방법 제42조의11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설비기사

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여야 할 소방설비공사의 종류와 범위를 소방설비기사의 자격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함. 다만, 소방시설의 경미한 정비시공으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소방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소방설비기사의 책임하에 시공·관리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영 제28조의 3).

카. 청원소방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그 배치·경비·교육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청원소방원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그 직무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2조내지 제47조).

타. 소방구급대의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48조).

파. 소방구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료기관의 협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무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도록 함(영 제49조).

<법제처 제공>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84. 6. 30)

건설부령제371호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중 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 조제 1 항제 1 호 카목중 “33제곱미터 이하”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 7 조제 1 항제 1 호 타목중 “영농자재의 보관”을 “영농자재의 보관 및 굴의 양식”으로 한다.

제 7 조제 1 항제 3 호 다목중 “동사무소(신축은 행정구역 개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에 “보건진료소”를 삽입하고 동호 라목중 “학교(교육법 제8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및 대학에 준하는 신학교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학교(교육법 제8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 7 조제 1 항제 3 호에 도목 내지 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도. 북한산 국립공원안에 설치하는 공원시설(공중목욕장·호텔 및 콘도미니엄시설을 제외한다)

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 대회를 위하여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미사리에 설치하는 조정경기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모. 체육부장관이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입지를 선정한 것으로서 그 설치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는 연습용 잔디축구장 시설 및 그 부대시설

보. 한국마사회가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원당리 소재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의 부지안에 설치하는 종마의 보급·사육을 위한 시설 및 부대시설

제 7 조제 1 항제 6 호 다목의 (2)중 “장의사 및 방앗간”을 “장의사·방앗간·약국·정육점”으로, “유치원”을 “유치원(새마을유아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 8 조제 11호중 “취락구조개선사업”을 “공익사업·부락공동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제 8 조제 14호중 “제 7 조제 1 항제 3 호 거목·너목 및 러목 내지 노목과”를 “제 7 조제 1 항제 3 호 거목·너목 및 러목 내지 보목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그 구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국립공원 시설의 확충과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에 대비한 국가체육시설의 설치 그밖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생활의 필요에 응하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행위를 일부 한정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행위를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할 수 있게 함.

(1) 북한산국립공원안의 공원시설의 설치(영 제 7 조제 1 항제 3 호 도목).

(2)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정경기장 시설 및 연습용 잔디축구장 시설의 설치(영 제 7 조제 1 항제 3 호 토목 및 모목).

(3) 한국마사회가 행하는 종마사육시설의 설치(영 제 7 조제 1 항제 3 호 보목).

(4) 보건진료소의 설치(영 제 7 조제 1 항제 3 호 다목).

나.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공장·주택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용되는 바, 이러한 근린생활 시설에 약국·정육점 및 새마을 유아원을 새로이 추가함(영 제 7 조제 1 항제 6 호 다목(2)).

< 건설부 제공 >

문화재 지정공고(84. 6. 21)

건설부공고제50호

건축법시행령 제 7 조 제 3 호의 규정(문화재주변 건축허가 사전승인)에 의한 대상문화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공고한다.

지 정 문 화 재 목 록

종	별	지	정	명	수	량	면	적	소	유	자	또	는	소	재	지	주	소
종	별	번	호	칭	보	유	적	별	보	유	유	자	자	재	지	주	소	
○서사	울적	296		觀象監觀天臺			1 기		사				유	종로구	원서동	206-2		
		297		夢村土城			35,939평		국				유	강동구	이동	일원		
○대보	구물	601		遼城道鶴洞石造浮屠			1 기		국				유	대구시	동구	도학동		
○경보사	기물적	749		太古寺圓證國獅塔			1 기		태	고			사	고양군	신도읍	북한리	15	
		299		堤岩里, 三·一運動殉國遺蹟			301m ²		사				유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중요민속자료	원속	124		華城鄭用采家屋			1 광		정	용	채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109	
		125		華城朴熙錫家屋			1 광		박	희	석			화성군	서신면	궁평리	84-1	
		126		麗州金榮龜家屋			1 광		김	영	구			여주	대신면	보통리	190	
		127		魚在淵將軍生家			1 광		어	영	선			이천군	울면	산성리	74	
		128		楊州白壽鉉家屋			1 광		백	수	현			양주군	남면	매곡리	282	
129		榛接呂卿九家屋			1 광		여	경	구				남양주군	진접면	내곡리	286		
○강중요민속자료	원속	131		高城魚命驥家屋			1 광		어	명	기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	551	
○충중요민속자료	북속	133		淸原李恒熙家屋			1 동		이	풍	우			청원군	남일면	고은리	190	
		134		報恩宣炳國家屋			1 광		선	병	국			보은군	외속리면	하개리	154	
○전사	북적	298		南原城			1,405m ²		국				유	남원시	동충동			
		303		廣寒樓苑			15,122평								남원시	천거동		
중요민속자료	원속	149		南原夢心齋			1 광		박	인	기			남원군	수지면	호곡리	796-3	
○전사	남적	304		潭陽萍瀧園			1,228평		사				유	담양군	남면	지곡리		
		302		樂安邑城마을			1,380m ²		국	유	및	사	유	승주군	낙안면	남내리		
○경사중요민속자료	북적	300		慶山林堂洞古墳群			10,097평		사				유	경산군	경산읍	임당동	676-1	
		122		安東河回民俗마을			1,175필지 (5,288,008m ²)		국	유	및	사	유	경북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	
"	"	168		盈德忠孝堂			1 광		이	근	화			영덕군	창수면	인양동	465	
"	"	174		栗峴洞勿贊堂			1 광		임	좌	원			예천군	유천면	울현동	143	
"	"	175		永川晚翠堂			1 광		조	익	현			영천군	금호읍	오계동	271	
"	"	176		佳日樹谷宋宅			1 광		권	대	종			안동군	풍천면	가곡동	419	
"	"	177		河回洞河東古宅			1 광		유	단	하			안동군	풍천면	하회동	739-2	
"	"	178		下里洞日省堂			1 광		이	중	훈			안동군	풍산읍	하리동	192	
"	"	179		五美洞參奉宅			1 광		김		윤			안동군	풍산읍	오미동	248	
"	"	180		晚雲洞慕告樓			1 광		이	광	직			안동군	풍산읍	만운동	881-1	
"	"	181		義城金氏栗里宗宅			1 광		김	성	수			안동군	풍산읍	모곡동	33	
"	"	182		義城金氏西拔齊舍			1 광		김	시	인			안동군	와룡면	서밭동	311	
"	"	183		安東權氏陵洞齊舍			1 광		권	재	영			안동군	서후면	성곡동	393	
"	"	184		知禮洞五柳軒			1 광		김	원	택			안동군	감동면	지례동	357	
"	"	185		法興洞固城李氏宗宅			1 광		이	찬	형			안동시	법흥동	9-2		
○경중요민속자료	남속	186		咸陽鄭炳鎬家屋			1 광		정	병	호			함양군	지곡면	개평리	262-1	